

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18-69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 : 2018. 8. 23.
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제출사유

- 추경예산 편성에 의한 2018년도 기금 세입·지출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함

2. 주요내용

- 남북교류협력기금
 - 남북평화협력 무드가 본격화 될 경우 구 단위 교류협력 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1억을 추가로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조성하여,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시 신속히 기금을 투입하고 남북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구분(편성목)	변경전(기정액)	변경후(경정액)	증감
예치금	50,000천원	150,000천원	100,000천원

3. 근 거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조성)

4. 첨부

-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

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

1. 기금개요

- 설치근거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
- 설치년도 : 2014년
- 재원조성 : 일반회계 전입금, 이자수입 등
- 기금용도
 - 구와 북한 주민 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
 -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 -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

2.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○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기정액	경정액	증감	비고
합계			256,663	356,663	100,000	
세외수입			4,100	4,100	0	
경상적 세외수입	이자수입	216-01 공공예금이자수입	4,100	4,100	0	공금계좌, 정기예금 발생 이자
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			252,563	352,563	100,000	
보전수입 등	예치금 회수	714-01 예치금회수	202,563	202,563	0	2017년도말 기금잔액 예치금
내부거래	전입금	721-03 기타회계전입금	50,000	150,000	100,000	전입금 1억 증액

○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기정액	경정액	증감	비고
합계			256,663	356,663	100,000	
구정현안 협업기반 조성			50,000	50,000	0	
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	일반운영비	201-01 사무관리비	1,260	1,260	0	심의위원회 위원 수당
	일반운영비	201-03 행사운영비	48,740	48,740	0	남북교류협력 사업비
재무활동			206,663	306,663	100,000	
보전지출	여유자금 예치	602-01 예치금	206,663	306,663	100,000	예치금 1억 증액